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항: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
② 제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③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: 2024. 7. 24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 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 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 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 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 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 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 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 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 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 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통신평 약으로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 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 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 배당상품이며, 국내 채권 및 국 내 주식 통신평약으로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 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 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 -	<u>2024. 5. 31. 기준</u> <u>2024. 6. 26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6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 년 경과 내역 삭제	주식 부책임용인력 : 오대식 (2020.01.09~2020.03.18)	<u>〈삭 제〉</u>

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 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 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 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 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(생 략)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 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 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 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(생략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 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 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 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 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 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 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 에 적합한 투자자 유 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 준 변경	<u>표준편차 3.56%</u> <신설>	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 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</u> <u>7.70%</u> - 위험등급 변경 내역 : <u>2024.7.24 : 투자위험등급 산 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“주간 수익률의 표</u>

		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 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 우 <u>표준편차</u>	<u>준편차”에서 “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” 기준으로 변경</u>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 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 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
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 청 가능시간 〈신 설〉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 청 가능시간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 료 부과 여부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 제 13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 -	<u>2024. 5. 31. 기준</u> <u>2024. 6. 26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 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만원</u> (공적 연금소득 제외) <u>1,200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 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만원</u> (공적 연금소득 제외) <u>1,500만원</u> 초과시 종합과세 또 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4.1.1</u>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13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6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3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6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13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6. 26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	<u>2024. 6. 30.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사 전환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6. 30. 기준</u>